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17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이 2019. 10. 21.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2. 접수 제9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0. 1. 3. 접수 제1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6. 7. 18.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C이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2. D은행에게 14,000,5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0. 21. 피고 A와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피고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만이 해당되고,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A와 전득자인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해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미 C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전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C은 피고 A에게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도 급감하여 결국 2019. 10. 25.경 폐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 A의 친동생 남편이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금 명목으로 C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누구보다 C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 E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가등기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북도 완주군 F 임야 13,529㎡
2. 전라북도 완주군 G 임야 10,651㎡. 끝.

